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선진사례 조사 국외출장 보고서 [영국 스코틀랜드]

2017. 6.

I 개요

□ 목 적

- 선진 외국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정책 및 제도를 이해하고, 주민 참여형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 및 다양한 안전사업 현장 탐방 실시
-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역연대 안전 프로그램으로 적용·활용하는 등 지역연대 사업추진역량을 제고

◆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은 여성안전취약지역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사업(안심귀가, 안전진단,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체계적 폭력예방활동(’17년 업무계획)’을 위하여 우리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역연대가 추진하는 하는 주요사업임

□ 출장기간 : '17. 6. 3.(토) ~ 6.10.(토), 6박 8일

□ 출장인원 : 총17명

-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담당사무관) 1명
- 형사정책연구원(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기관 연구원) 1명
- 자치단체 공무원(지역연대 및 안전프로그램 담당) 15명

□ 방문국가 : 영국 (스코틀랜드)

- 출장국 선정사유
 - 스코틀랜드는 90년대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 및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지역공동체의 연대체인 공동체안전파트너십(community safety partnership)을 활용하여 전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및 파트너십의 연대체인 지방정부협의회(COSLA)와 스코틀랜드 공동체안전네트워크(SCSN)를 통해 공동체 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안전프로그램 사업과 유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주요방문기관

구분	방문기관 정보
던디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CSP) (Dundee Community Safety partnership)	▪ 던디시 Housing office 건물 내 위치 ▪ 던디시 소속으로 지역내 안전 활동 실시
던디 형사사법 사회복지 부서 (Criminal Justice Social Work In Dundee)	▪ 던디시 위치 ▪ 던디시의 형사사법 사회복지 업무 담당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 (University of Strathclyde)	▪ 글라스고 위치 ▪ Equally Safe in Higher Education정책 추진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협의회 (The Convention of Scottish Local Authorities)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글라스고에 위치 ▪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정책아젠다 개발조직 ▪ 여성과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평등한 안전(Equally Safe) 추진
글라스고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 (Glasgow Community Safety partnership)	▪ 글라스고시 위치 ▪ 글라스고시 소속으로 지역 안전 활동 실시

□ 세부일정(각 현지시각 기준)

일자	지역	시간	세부일정	비고
1일차 6.3.(토)	인천	14:30	• 11시 인천공항 집결(11시) 사전미팅 후 출발	OZ 521 BA 1462
	런던(경유)	18:25 21:50	• 런던 (히드로공항) 도착 • 런던 (히드로공항) 도착런던 출발	
	에든버러	23:10	• 에든버러(에든버러공항) 도착	
2일차 6.4.(일)	에든버러	10:00	• 던디시로 이동	전용차량
	던디	14:00	• 기관방문 사전준비 회의 (주요 질문지 점검 등)	
3일차 6.5.(월)	던디	10:00 ~15:00	• 던디시 공동체안전 파트너십 방문	전용차량
4일차 6.6.(화)	던디	10:00 ~15:00	• 던디시 형사사법사회복지부서 방문	전용차량
	글라스고	16:00	• 글라스고로 이동	
5일차 6.7.(수)	글라스고	10:00 ~14:00	•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 방문	전용차량
6일차 6.8.(목)	글라스고	10:00 ~12:30	• 스코틀랜드 지방정부협의회 방문	전용차량
		15:00 ~18:00	• 글라스고 공동체안전파트너십 방문	
7일차 6.9.(금)	에든버러	10:00 16:00	• 해외 연구자 초청 특강 • 에든버러 공항 집결(13시)후 출발	전용차량
	런던	17:25 20:25	• 런던(히드로공항) 도착 • 런던(히드로공항) 출발	BA 1447
8일차 6.10.(토)	인천	15:50	• 인천공항 도착(한국시각)	OZ 522

□ 주요내용

- 방문국의 안전사업 관련 제도 및 정책 조사, 업무조직, 운영현황 조사
-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및 주민참여 우수사례 현장탐방
- 해외 연구자 초청 특강 및 세미나 개최

□ 출장자별 주요임무

연번	구분	소속	부서	직급	성명	비고
1	출장 총괄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행정5급	고승지	
2	토론회 주관	형사정책연구원	지역연대중앙지원센터	연구위원	장다혜	
3	<1조> 던디시의회 방문 주관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복지실	4급	정귀숙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사회복지7급	김중대	
5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8급	김수기	
6	<2조> 던디시청 방문 주관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5급	이성호	
7		경상남도 고성군	행복나눔과	행정6급	곽은주	
8		경기도	여성권익가족과	행정9급	김미숙	
9	<3조> 대학 방문 주관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5급	김은남	
10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6급	전진욱	
11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보육과	사회복지8급	최은정	
12	<4조> COSLA 방문 주관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행정5급	성미향	
13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행정7급	심미애	
14		경상남도 사천시	사회복지과	행정8급	이혜진	
15	<5조> SCSN 방문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행정5급	이인옥	
16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행정6급	주애경	
17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사회복지8급	권민아	

※ 조별 수행임무(3인 1조)

(사전) 방문기관에 대한 사전 자료조사, 질문지 작성

(당일) 기관 방문 프로그램 진행, 기관 방문 후 토론회 주관

(사후) 담당기관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II 출장국가 개관

□ 영국 기본정보

- 정식명칭 :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그레이트 브리튼은 북부의 스코틀랜드 남동부의 잉글랜드, 남서부의 웨일스로 구성

- 수 도 : 런던(London, 8677만명)
- 인 구 : 약 6408만8222명(2015년)
- 면 적 : 241,752 km² (한반도의 1.1배)
- 주요도시 : 에딘버러(Edinburgh), 리버풀(Liverpool), 캠브리지(Cambridge)
- 주요민족 : 앵글로 색슨(Anglo-Saxons), 켈트(Celts)
- 공 용 어 : 영어
- 종 교 : 영국국교회(Anglican Church, 50%), 감리교(Methodism, 30%), 카톨릭(11%)



○ 역사

- 영국의 기원은 5-6C경 게르만계의 앵글로 색슨족이 잉글랜드에 침입해 9C경 통일된 왕국을 수립,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헌장(마르나카르타)의 제정을 비롯해 시민혁명, 권리장전 등 세계 민주주의의 발생국이며, 많은 식민지를 보유한 대영제국의 제국주의 역사를 지님
- 2차 세계 대전이후 식민지의 잇따른 독립으로 화려했던 대영제국의 면모는 많이 사라졌으며, 1997년 7월 1일을 기해 홍콩도 중국에 반환되어 비로소 제국주의의 종말을 고함.

○ 정치

- 입헌군주제로 국왕은 상징적, 의전적 기능만 갖고 총선거에서 다

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집권당이 되고 집권당 수상이 행정수반이 됨.

- 하원은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된 65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법안을 의결하고,
- 상원은 세습귀족, 성공회주교, 법관 등으로 구성되며 그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관습적 전통에 따라 연합왕국의 최고재판소로서 기능하는 '국회법원'의 권한을 행사

○ 경제

- 2017년 기준 총GDP는 2조4,968억(\$로 세계 5위이고 1인당GDP는 3만 7,813\$로 세계 25위임이며 통화는 파운드임
- 1973년 유럽통화는 파운드
 - ※ 한국 : GDP 1조4,981억 달러(세계12위), 1인당GDP 2만9,115\$(세계30위)
- 주요 산업은 금융업, 철강, 관광산업이며, 주요 교역 대상국 유럽 연합과 미국
- 1973년 EU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가입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EU의 재정악화가 심화되어 영국의 부담금이 점차 증가하자, 2016.6.23 국민투표결과 51.9%의 찬성으로 EU유럽연합에서 탈퇴하였음(브렉시트)

○ 사회

- 전통적인 계급 또는 계층사회로 출신, 직업 교육정도 등에 따라 3분위로 나뉨. 상위층은 국왕.왕족.귀족 등이며 중위층은 젠티리

(gentry)라는 중산계층으로 이른바 젠틸맨이라 자부하는 계층으로 그 폭이 가장 넓고 영국사회의 중심체가 됨. 하위층은 농업. 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 속하는 노동층임.

- 하류 노동계급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발달되었고, 1950년대 집권 노동당 집권후 사회복지가 강화된 나라로 특히 의료혜택은 전국민이 무료이며 병원은 공영화 되어 있음

※ 주 영국대사관 : 60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44(0)20 7227 5500 / koreanembnuk@mofa.go.kr

□ 영국의 행정체제

- 대영제국으로도 불리는 영국에는 한 나라(nation) 안에 4개의 국가(country)인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존재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각 국가들은 주권국가는 아니나, 영국세분 국가표준화 기구(ISO)의 목록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가 포함됨(북아일랜드는 프로빈스(province)로 표현됨)
- 잉글랜드의 행정 구역: 잉글랜드는 9개의 지역(region)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지역은 다시 48개의 주(county)로 나뉨
- 스코틀랜드의 행정 구역: 스코틀랜드는 32개 주(council area)로 나뉨.
- 웨일스의 행정 구역: 웨일스는 22개 주(unitary authority)로 나뉨.
- 북아일랜드의 행정 구역: 북아일랜드는 26개 구(district)로 나뉨.

- 영국은 웨스트민스트로 불리는 영국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법에 의해 규제됨. 영국 내 국가들은 별도의 의회나 법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영국과 각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 별도의 의회나 법률의 존재 여부에 차이가 있음.
 - 잉글랜드: 별도의 의회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잉글랜드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제되며, 잉글랜드법의 관할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임.
 -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법이 별도로 존재함.
 - 웨일즈: 웨일즈의회가 존재하나 웨일즈법 이외에도 잉글랜드법의 관할임.
 -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회와 북아일랜드법이 별도로 존재함.

- 다른 유럽국가가 지방분권이 강한 것과 달리 영국은 중앙집권의 전통이 유럽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에 강한 나라임. 영국의 지방정부구조에 대해 일반적으로 영국하면 지칭되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의원내각제로,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의해 구성됨. 그러나 런던과 같은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음.
 - 영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청뿐 아니라 경찰, 소방, 교통의 행정기구를 포괄.
 - 영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에 의해 독립적인 정부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에 소방과 경찰

기능이 지방정부에 포함됨. 다만, 일부지역의 경우 통합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방과 경찰 기능은 지방정부와 분리되어 권역별로 통합하여 설치됨.

- 영국의 중앙-지방 복지재정 분담구조를 살펴보면, 사회보장급여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명확한 분담구조를 가지고 있음.(행정조직 뿐 아니라 예산까지 분리되어 있음)

- 중앙정부는 연금, 실업 및 고용, 빈곤 등과 관련된 사회보장급여와 사업을 담당하며, 이러한 사업전달체계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역기구 설치를 통해 구성되어 있음. 중앙정부의 예산은 소득세, 법인세, 물품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사회보험기여금 등으로 구성됨.

-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에서 보육, 돌봄, 보호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며, 관련 예산도 대체로 지방정부의 예산을 통해 직접 조달됨. 이 때 지방정부 예산은 자체 세원(지방의회세와 사업세)과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산체계는 중앙과 분리되어 집행됨.

□ 스코틀랜드 중앙-지방정부 행정체계

- 스코틀랜드는 1997년 주민표결에 의해 스코틀랜드 주민에 의해 직선되는 의원으로 구성된 스코틀랜드 의회와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권한 이양을 통해 일정한 권한 내에서 스코틀랜드 지역문제와

관련된 입법을 제정할 수 있음.

- 스코틀랜드의회와 집행기관인 스코틀랜드 자치정부(Scottish Government, 이전에는 스코틀랜드 집행부(Scottish Executive)였으나 스코틀랜드 법(Scotland Act로 변경, 2012)은 중앙정부의 스코틀랜드 지역 정부 기능을 거의 인수하였음.
- 스코틀랜드부와 스코틀랜드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Scotland)은 정부와 스코틀랜드 간 조정하는 역할로 유지되었으나 2003년 헌법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DCA)가 신설되면서 헌법부로 통합됨. 헌법부는 상원 및 대법원, 지역에의 권한 이양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였으나 현재는 해당 기능을 2007년에 설립된 사법부(Ministry of Justice)가 담당하고 있음
- 스코틀랜드는 재정 면에서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지만 교육 및 복지정책 등 분권된 분야에서는 스코틀랜드 독자적 정책을 시행

○ 스코틀랜드 정부(Scottish Government)는 의회의원 중, 선거로 수상(First Minister)을 선출하며, 장관(Minister) 및 정무차관(Junior Minister)은 수상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의원 중에서 임명함. 내각의 구성원 수 및 역할 등은 수상의 전결사항(실제로는 수상이 속한 정당의 의향을 반영)이기 때문에 의회의 여당이 바뀌면 자치정부의 조직도 변화

-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0년 12월 재조직화되어, 의회 사무국(Office of the Permanent Secretary), 교육 및 사법 이사회

(Learning and Justice Directorates), 건강 및 사회 보호 이사회(Health and Social Care Directorates), 기업 · 환경 · 디지털 이사회(Enterprise, Environment and Digital Directorates), 재정 이사회(Finance Directorates), 행정 이사회(Governance and Communities Directorates), 전략 및 대외사업 이사회(Strategic and External Affairs Directorates)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스코틀랜드 지방행정구조는 스코틀랜드 의회(지역정부)와 33개의 광역자치단체인 카운티(County)와 4개 대도시 카운티(Cities of Councils), 기초자치단체인 197개 버러와 196개 디스트릭트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이중 9개 카운티와 53개 디스트릭트가 29개 통합의회로 개편됨.

- 카운티는 당초 고속도로와 교량, 난민 보호시설, 도량형 및 부분적인 경찰기능에 제한된 권한을 지녔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확대됨.
- 버러는 인구 20,000명을 기준으로 대규모 버러(Large Burgh)와 소규모 버러(Small Burgh)로 구분되었고, 대규모 버러의 경우 카운티로부터 대부분의 기능(교육 제외)을 이양 받아 독자적으로 수행한 반면, 소규모 버러는 주택, 가로 정비, 하수도 등 일부 주민편의 기능만을 수행

○ 지방행정서비스의 주요 범주

- 필수 서비스: 교육, 개인적 사회복지 서비스, 주택 등

- 보호 서비스: 경찰, 공동체 안전, 소방/구급, 긴급 계획 등
- 편의 서비스: 도로, 거리청소, 계획, 주차장, 환경보건, 쓰레기 처리, 소비자 보호, 경제 발전 등
- 시설 서비스: 주택, 도서관, 박물관, 예술 갤러리, 레크레이션 센터, 장묘, 쓰레기 수집 등

○ 지방 정부 이외의 기타 행정기관이 존재함. 대표적인 것이 국민보건서비스청(NHS)임.

- NHS는 국영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의료서비스 기관으로, 환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영국 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지역에도 위치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의료서비스의 내용, 예산편성, 치료, 관리지침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됨.
- 중앙정부 산하 보건부가 지역별 NHS에 개별 예산을 배분하고, 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배분함.

○ 스코틀랜드 지방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인 중앙정부 공무원(Civil Servants)와 달리, 공공부문 종사자로 지방정부 고용인에 속하며, 여기에는 교원, 경찰, 지방정부직원 등이 포함됨.

- 채용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특정 직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를 채우기 위하여 개별적인 충원을 실시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채용의 기준으로 활용
- 분야별로 전문성을 중시한 채용이 이루어지며, 정기적 인사이동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부처 간의 인사이동과 승진이 거의 없는 편임. 근무연차에 의한 이동이나 승진도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 조직 내의 승진 혹은 특정직의 이동을 희망하는 자는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경쟁하게 됨.

□ 스코틀랜드 공동체 안전 정책(여성·아동안전포함)

○ 공동체 치안(Community Policing)의 등장

- 1950년대 지방경찰조직을 중심으로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안전을 강화하는 활동을 시작함. 이를 Community Policing으로 명명.
- 1956년 Greenock에서 출발하여 Goatbridge, Kilmarnock, Paisley, Perth의 도시들에서 운영되었음.
- 경찰관이 지역 내 사회복지와 공동체 구성원(학교, 보호관찰관, ministers, 지역 기업과 가족 등)과 긴밀하게 활동하여 청소년에 대한 감독과 감시 진행(미성년자 범죄 예방)
- 지역단위 각 주체가 협력함으로 장기적인 범죄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관점이 마련.

○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community safety partnership)의 등장배경

- 80년대 초반부터 지역 범죄예방 패널에서 사회복지, 교회, 건축, 도시계획, 학교 등등 함께 모여 활동하기 시작함. 협력형태는 경찰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지역범죄예방패널 주도로 이루어지기도 함.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사회적 환경 개선 프로젝트와

복합적으로 운영됨.

- 1988년 new life urban scotland 정책이 실시되면서, 더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Safer cities project)가 등장함. 이로부터 범죄예방 보다는 공동체 안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시작
-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1998년 범죄와 무질서법(The Crime and Disorder Act)이 제정되면서, 지역 범죄와 무질서 감소 파트너쉽(CDRPS, local crime and disorder reduction partnerships)이라는 공식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도가 진행됨.
- 스코틀랜드에서는 파트너쉽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더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가 결합하였으며, COSLA가 주도하여 공동체 안전 파트너쉽의 활동을 정교화시키게 됨.(1991년 Morgan Report에서 처음 사용된 "공동체 안전(community safety)"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안전한 지역사회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경찰, 소방 및 구조 서비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인식 속에 파트너쉽을 강조하게 됨.
- 1998년 스코틀랜드의 행정부에서 National Community Safety Advisor를 위한 자금 확보, 지방 당국 및 파트너와 협력 관계(파트너쉽) 모델 개발하였으며, 스코틀랜드 행정부, COSLA 및 스코틀랜드 경찰청장 (ACPOS)은 지역사회 안전을 개발하는 방법에 합의하고, "협력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행동 전략" 문서 발표
-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지역사회 안전 포럼(SLACS)은 지원과 효과적인 실천을 제공하고 공유하는 실무자의 비공식 네

트위크로 형성하게 됨.

-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community safety partnership, CSP)의 발전
 - 1999년 스코틀랜드 정부는 "더 안전한 스코틀랜드(A Safer Scotland)" 지침을 제시하여,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공의 신뢰 구축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의 방향을 제시함. 또한 CSP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담은 "Safer Communities in Scotland" 발간함.
 - CSP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03년 스코틀랜드 지방정부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함.
 - 2005년 각 지자체 내 CSP의 네트워크인 SCSN (Scottish Community Safety Network)가 출범하여,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지역사회 안전의 전략적 개발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최근에는 지자체 CSP뿐만 아니라 지자체 이외에도 소방서장협회, 영국 교통경찰, 스코틀랜드 중앙정부 등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경찰, 소방 및 구조 서비스, NHS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안전한 지역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파트너십을 통한 작업이라는 합의 하에 지난 20년 동안 협력 관계의 개념은 더욱 강해졌고 현재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파트너십 작업과 성과에 중점을 둠.
 -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및 구조,

NHS, 알코올 및 약물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조직들과의 협력으로 구성.

-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여성 폭력 파트너십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활동이 전개됨.

III 기관방문활동

① 던디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CSP)

구 분	방문개요
일 시	2017. 6. 5. (월) 오전10시~16시
장 소	던디시 의회 Community Safety Hub
면담자	Garyth Jardin (Community Safety Manager) Tom Stirling (Head of Community Safety and Protection) Alan Ross (Convener of Community Safety and Public Protection Committee; Scottish National Party Councillor)
기관주소 연락처	(주소) Dundee City Council Community Safety Hub West District Housing Office 3 Sinclair Street Lochee, Dundee DD2 3DA (Tel) 01382 436333 or 436302 Mobile 07985877690 (Email) garyth.jardine@dundeecity.gov.uk

□ 방문개요

- 던디시의 CSP의 구성과 역할, 특징에 대한 이해
- 아동안전프로그램인 스쿨토크(School Talks)의 활동 이해 및 현장 견학
- 찾아가는 안전캠페인(Door Knocking & Leaflet Drops), 인터넷 안전사업 및 캠페인(Internet Safety Talks & campaign), 주요 추진사업 이해 및 현장 견학

□ 기관 면담 내용

- 던디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CSP)의 목적과 구성

- CSP의 주된 목적은 파트너십을 일깨우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의 협력이 주요하게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에 있음.
- 스코틀랜드 정부와 던디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체안전단 (Community Safety Unit, CSU)이 있으며, 여기서 공동체안전파트너십을 조직하고 운영함. 던디시청의 CSU는 공동체 안전팀(Community Safety Team)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던디시 CSP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공동체 안전팀은 던디시 공동체와 정책 부서 내에 있음.
- 던디 CSP 구성원: 던디시 지방정부(공동체 부서여가와 공동체 부서, 사회복지 내 청소년사범 및 형사사범 부서, 여성 폭력 파트너십 담당자, 보건과 안전 부서, 재정부서, 교육 부서, 시 발전부서, 반사회행동 및 주거 부서), 시민사회단체(던디시 자원봉사단, 성폭력상담소, 피해자지원 및 증인 지원 서비스, 던디 여성 구조), 지역 공동체 안전 그룹(성 메리 공동체 안전 패널, 던디 서부 임차인 및 거주민 연합, 던디 세입자 연합), 스코틀랜드 경찰, 스코틀랜드 소방 및 구조 서비스, 테이지역 공동체 사범 기관, NHS, 던디 알코올 및 약물 파트너십, 검찰 등에 소속된 담당자
- 하위그룹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1) SIME(Strategic Inform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년2회의 모임을 진행하며, 각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CSP의 전략을 만들고 평가를 진행함. 2) HIMAP(Hate Incident Multi Agency Partnership): 로치 서부 주택 공사에서 월2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혐오 사건이나 혐오 범죄 발생이나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정책, 재범방지를 위한 가해자에 대한 지원, 혐오범죄와 관련된 범죄 두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함. 3) Needle: 약물 주입을 위한 주사바늘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며,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함. 4) E-Safety: 던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위원회와 함께 하며, 던디 내 사이버 의사소통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행동전략과 쟁점에 대해 공유하고, 직원, 부모, 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 자원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사기, 사이버 따돌림 등의 이슈를 다룸. 5) Prevent: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시각이나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파트너쉽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공동체의 취약성이나 위협이 되는 요소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함.

- 실무기구: 공동체 사법(Community Justice), 보건, 경제, 아동 등 4개의 실무팀이 구성

○ 던디 공동체 안전 파트너쉽(CSP)의 활동범위

- 공동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룸
-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고나 온라인 공간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협박, 괴롭힘의 가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부터 특히 취약 그룹인 아동이나 노인, 범죄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착취나 성매매, 혐오범죄 등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 대응함.
- 2004년 반사회적 행위 금지 명령 등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동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쾌한 행위, 무분별한 행위, 무질서한 행위, 공격적인 행위 모두를 다룸. 이런 행위는 사소한 행위이지만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CSP는 지역 사회의 환경을 해치는 거리청결, 쓰레기 불법투기, 낙서, 기물파손, 야생동물 안전 등 거리나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에서부터 테러나 심각한 조직범죄 등까지 모두 다름.

- CSP의 주된 활동 중 하나는 범죄자의 관리인데,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가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범죄자 관리 역시 공동체 안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 던디 Community Safety Hub

- 면담을 진행했던 장소가 공동체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각 기관의 모든 담당자들이 모여 일하는 장소임.
-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와 긴급사안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2012년 12월에 만들어짐.

□ 주요 질의 · 답변 내용

- 던디 CSP의 주요 활동 중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요업무라는 차원에서 intelligence led tasking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각 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 예를 들어, 경찰과 주거관련 부서 공무원이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거관련 부서에서는 지역 내 소음 신고의 상황을 알고 있는데 이를 경찰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주로 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이 강화될 수 있음.
 - 지역 내 경범죄에 대한 예방과 범집행의 강화를 통해 중대한 범죄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 던디에서는 경찰, 소방, 사회복지, 주거 등 담당 매니저들이 모두 모여 주1회 이상 네트워크 만남을 전개함. 2013년부터는 허브센터에서 함께 일하면서 업무 공조가 도움 활발해졌음.

- 던디 CSP의 활동에서 정보공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정보분석담당자를 2명을 증원하였음.
 - 정보분석담당자들은 경찰을 통해 범죄와 관련된 위치 정보나 범죄유형 등을 공유받고 범죄패턴을 분석하여,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의 경우 범죄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지역연대에서는 공유받기가 어려운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어떻게 가능한가?
 - CSP에서도 함부로 개인정보를 공유받을 수 없음. 그러나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된 범죄유형, 예를 들어 아동성폭력 등과 관련된 사안은 범죄자나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단, 정보를 공유할 때에 비밀보호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 CSP에서는 정보 공유에 관한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음.

-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 스쿨토크(School Talk)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찰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22년동안 안전교육을 진행했는데 5년 전부터 CSP가 담당하여 학교를 방문하여 안전 교육을 진행함.
 - CSP에서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교육을 진행함.
 - CSP 교육의 장점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2년 전부터 던디 시에서 버스 기물파손 사건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교육을 버스회사와 협력하여 실제 버스를

활용한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직접 시나리오에 따라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임. 최근에 버스 기물파손 사건이 줄어든 것은 이러한 교육의 성과라고 생각됨.

- 던디 CSP의 활동이 상당히 광범위한 것 같은데 여기 인력이 어떻게 되는가? 또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 던디 CSP는 구성원지 현재로 12년 정도 되었는데, 초기에는 36명이었으나 최근 예산이 삭감되어 27명으로 줄어들었음
- 남성 대 여성 비율은 15~25% 정도로 남성이 많은 편임.

□ 기관 방문 사진



단체사진



건물전경



② 던디 형사사법 서비스 사회복지(Criminal Justice Services Social Work)

구분	방문개요
일 시	2017. 6. 6(화) 오전 10시~16시
장 소	던디시 지방정부 사회복지 부서 공공보호팀
면담자	Stephen Lindsay (Public Protection Team Manager, Criminal Justice Social Work) Mark Day(head, Criminal Justice Social Work)
기관주소 연락처	(주소) Dundee City Council Social Work Department Criminal Justice Services Friarfield House Barrack Street DUNDEE DD1 1PQ (Tel) 01382 435001 (Email) steve.lindsay@dundeecity.gcsx.gov.uk

□ 방문개요

- 던디시의 형사사법 사회복지부서 및 사업구성에 대한 이해
- 지역주민 참여형 범죄자 관리 사업에 대한 소개

□ 기관 면담 내용

- 형사사법사회복지(Criminal Justice Social Work) 업무란?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업무 중 형사사법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자에 대해 하는 업무임
 - 형사재판을 통해 커뮤니티 관련 처분을 받은 16세 이상 범죄자에 대한 감독으로, 주로 Community Payback Orders를 받았거나 약물치료 및 검사 명령을 받았거나 가석방과 같이 구금 종료후 감독 등을 통해 범죄

자를 모니터링 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경감시키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임

- 구금과 같은 형집행 종료 후 특정한 범죄자에 대한 법적 감독
- 청소년 범죄자나 여성 범죄자 등에 따라 멘토링과 같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 지역 사회 내 혹은 구금시설에 있는 범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상황의 평가를 진행하여, 사회조사 내지 가정상황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법원의 선고와 양형의 결정이나 가석방위원회 결정시 범죄자에 대한 공동체 처분이 가능한지 혹은 지역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됨

○ 사회조사보고서(Social Enquiry Report)

- 사회조사보고서는 법원의 선고 전 범죄자에 대한 배경적 상황과 이전 위반을 포함하여 범죄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사건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줌.
- 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함. 어떤 사건이든 보고서 요청이 가능함. 만일 범죄자가 21세 미만인 경우에 공동체 처분 전에는 반드시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Community Payback Orders

- 2011년 스코틀랜드 정부에 의해 설텡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거리청소나 공원조성, 취약한 사람들 대상 배달서비스 등과 같은 무급노동, 감독 및 모니터링, 보상,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거주 제한, 행위제한, 치료 등이 포함됨.
- 이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 감독하출석명령, 약물처리 및 검사명

령, 자유제한명령 등이 여기에 해당됨.

○ 형사사법사회복지(Criminal Justice Social Work)의 필요성

-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에서도 구금시설 수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감소시키려 하고 있음.
- 실제 살인범죄 등 중대한 범죄뿐 아니라 전체 범죄발생과 유죄 건수는 197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전체 범죄 중 중범죄 비율은 25%로 낮은 편이며, 그 중 성폭력 범죄는 4%로 역시 낮은 편임. (그러나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인식 수준은 높은 편이며, 사회 내 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 스코틀랜드 중범죄자의 특징은 대부분 남성이고, 약물중독자이며, 학업 중단 등으로 저학력, 저소득자라는 점인데, 현재 약물중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중대한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특성에 적합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 형사사법사회복지(Criminal Justice Social Work)의 체계

- 1968년 사회복지법(스코틀랜드) 제정을 통해, 32개 지방정부에 사회복지 부서 설치 및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생김.
- 그러나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 2005년 범죄자 관리법(스코틀랜드)에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 단위별로 8개의 형사사법연합을 구성하여 범죄자의 재화와 재범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구금시설 서비스 간의 협력을 강화하였음. 던디는 Tayside 지역 연합에 소속되어 있음.

○ 중대범죄자에 대한 지역공동체 참여형 관리 시스템인 MAPPA(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공 보호와 안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MAPPA는 2007년부터 형사사법사회복지 업무를 공동체 참여형으로 구성한 것임.
- 중대한 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됨. 지방정부와 경찰,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참여함.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나, 범죄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등 법률상 명시되지 않은 단체가 참여할 때에는 정보공유의 수준을 제한함.
- MAPPA는 성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폭력범죄자를 관리하며 위험성 평가뿐만 아니라 재범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사례협의를 하는 회의를 개최
- 여기에서는 고위험군 성범죄자 평가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고위험군 성범죄자 평가도구를 활용하긴 하지만 경찰, 사회복지사,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매주 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성 단계를 조정하기도 함.

○ 던디 형사사법사회복지 조직 구성

- 현재 6개 팀이 구성되어 있음
- 여성범죄자 특별부서(주로 성매매여성 담당), 남성범죄자 담당부서, 시민사회단체 관리팀, 마약 및 알코올 중독 약물치료를 위한 의료 부서, 경찰로 구성된 팀이 들어와 있음.
- 형사사법사회복지는 공동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므로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계를 위한 활동뿐 아니라 지역 경찰이 같은 사무실에 들어와 함께 근무하고 있음.

- 특히 경찰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함으로써 고위험 범죄자의 관리 감독 중 발생하는 긴급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음. 신속한 대처를 위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를 가진 경찰이 형사사법사회복지에 배치됨.

□ 주요 질의 · 답변 내용

- 여기서 담당하는 업무는 한국의 경우 "보호관찰" 업무로 우리는 중앙 정부인 법무부 특정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호관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는 "보호관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경우 범죄자의 사회복귀나 재활을 위해서는 보호관찰과 같은 법률용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음. Community payback ord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법률용어에 담긴 범죄성을 제거하는 방향임.
 - 최근에는 형사사법사회복지라는 용어 역시 범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속에서 2017년에 Community justice social work라고 변경하였음. 이제는 형사사법이 아니라 공동체 사법을 강조하고자 하고 있음.
-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는 경미한 범죄자뿐 아니라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고위험군 성폭력 범죄자들을 모두 관리하는데 이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지?
 - 이미 형사사법사회복지 업무 자체가 긴장관계에 있음. 왜냐하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범죄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동시에 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간극을 잘 조정해야 함.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78% 범죄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사회에 복귀함.

- 고위험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현재 형사사법사회복지의 업무가 수사와 같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작년까지 던디에서는 고위험군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란물(아동음란물 등)에 접하는 것이 범죄성향을 강화시킨다는 인식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사이버 범죄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사이버 범죄를 관리하기 위해 던디 대학과 함께 웹접속 기록을 스캔할 수 있는 장치도 개발함. 형사사법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이 장치를 활용하고 있음. 이것이 사회복지 업무가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음.

□ 기관 방문 사진



기관 설명



기관 사업 설명



질문 및 답변	질문 및 답변
	
답례품 전달	단체사진

③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젠더폭력방지 안전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일 시	2017. 6. 7. (수) 오전10시~14시
장 소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University of Strathclyde) Business School
면담자	Anni Donaldson (Knowledge Exchange Fellow & Project Lead, Equally Safe in Higher Education) Dr Melanie McCarry (Co-investigator of Equally Safe project) Anni McLaughlin (Gender Equality Officer) Alison Locke (HR manager) Dr Veen O'Halloran (Director of Student Experience and Enhancement Services)
기관주소 연락처	(주소) University of Strathclyde Business School, Stenhouse Wing, room SW104, 173 Cathedral Street, Glasgow, G4 0RQ (Tel) 0141 548 3699 (Email) veena.o-halloran@strath.ac.uk

□ 방문개요

-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근절 정책인 평등한 안전(Equally Safe)에 대한 소개
- 대학 내 성평등 정책 소개
- 대학 내 평등한 안전 정책과 캠퍼스 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톨 개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 기관 면담 내용

- 평등한 안전(Equally Safe) 정책이란?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젠더에 기초한 폭력으로 젠더 불평등과 남성 권력과 특권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함. 이러한 폭력은 여성과 아동들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를 주고 그들의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옴. 젠더 폭력의 주된 가해자는 남성이며 여성들은 주로 피해자가 된다는 특성을 지님.
- 스코틀랜드 정부는 젠더 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착목하여 2014년부터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전략으로 "평등한 안전"이라는 제목 하에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COSLA와 협력하여 평등한 안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
- 평등한 안전 정책은 스코틀랜드의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 여성과 아동이 모든 형태의 폭력과 남용에서 벗어난 사회라는 비전 하에 공공영역, 사적영역, 제3섹터가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협업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평등한 안전 정책의 방향: ① 스코틀랜드 사회는 평등과 상호존중을 받아들이며, 모든 형태의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거부한다. ② 여성들과 소녀들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는다. ③ 여성폭력에 대한 개입은 조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폭력을 예방하며, 여성들과 소녀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대화한다. ④ 남성들은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며, 여성폭력 가해자들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받게 된다.
- 평등한 안전 정책의 과제: 긍정적인 젠더 역할 증진, 지역 사회 내에서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과 존중, 그리고 평등의 실현, 어릴 때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고 적극적인 관계성을 이해함으로써 건강하고 적극적인 인간 간의 관계를 증진, 개인과 지역사회가 폭력적이고 남용

적인 행동을 인식하고 이에 저항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 추구, 여성과 남성 모두 동등하게 권력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 신속하고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사법적 대응 마련, 여성과 아동에 대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여성아동 폭력의 가해자를 사법체계에 서 조기에 확인하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조력할 수 있도록 함, 서비스 제공자들이 여성아동 폭력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여성아동 폭력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지원, 여성과 아동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고 그들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조성

- 젠더폭력: 가정 폭력, 강간과 성폭행, 성희롱, 온라인상이나 사적, 공적 괴롭힘 혹은 협박, 상업적 성착취, 아동성학대, 소위 명예범죄, 여성성기 절단, 아동과의 결혼, 강제와 같은 유해한 문화적 관습 등.
- 스코틀랜드 젠더폭력의 현황: 스코틀랜드 경찰은 59,882건의 가정폭력 사건을 기록(2014-15), 스코틀랜드 경찰에 의해 기록된 강간이나 강간시도 95%는 여성 피해자, 2014-15년 스코틀랜드에서 18세 이하의 피해자가 포함된 9,557건 중 최소 32%가 성범죄, 스코틀랜드에서 4%의 여성이 16세 이전까지 심각한 성폭력 경험, 영국 5명중 1명의 아동은 18세까지 가정폭력을 경험할 것임, 영국정부통계는 강제결혼의 79%가 여성피해자를 포함함을 보여줌. LGBT Youth 스코틀랜드 연구소에 의하면 응답자의 52%가 파트너나 전 파트너로부터 일종의 학대 경험, 스코틀랜드 경찰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보고된 강간에 책임이 있는 자의 1/3 이상이 16~27세 남성

○ 평등한 안전(Equally Safe) 전략과 대학 내 성평등 확산 정책

- 2010년 평등법에 의해, 스코틀랜드에서는 불이익과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들을 통합하였음. 기존에 9개로 분리된 영역을 통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특성으로 나이, 장애, 성별 정정, 결혼 및 동반자법, 임신 및 출산, 인종, 종교 및 신념, 성별, 성적 취향이 포함됨
- 이러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에서의 평등 의무가 규정됨: 공공 기관은 차별을 없애고 보호 할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 1) 관련된 보호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기회 균등 추진, 2) 보호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좋은 관계 형성
- 이에 따라 대학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의무를 가짐: 평등 의무 주류화(mainstreaming)에 관한 보고, 평등 결과 및 성과 발표, 정책 및 실시 검토, 직원 정보 수집 및 이용, 이사회 멤버에 대한 정보 사용, 성별 임금 격차 정보 게시, 동일 임금에 대한 진술서 공개, 공공 조달에 사용되는 기준 고려,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 게시
- 대학은 평등결과를 매 4년마다 발간하며, 이 때 평등의무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함. 이러한 결과는 대학이 가진 평등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시하게 됨.
- 평등영향평가: 대학이 평등과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책과 관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아테나 스완 제도(Athena SWAN)

- 대학 및 연구 기관을 위한 남녀 평등 현장 및 시상 제도로, 직원 및 학생을 위한 평등과 다양성을 지원하는 영국 단체인 Equality Challenge

Unit에서 관리함.

- 여기에는 학생과 교직원, 그들의 진로와 경력 향상이 포함되는데, 전에는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만 적용되었으며, 2015년에는 다른 주제 영역까지 확장되었음
- 이 제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나 대학들이 성과 협약(자금 지원을 통한 자신들의 성과목표를 제출함)을 통해 스코틀랜드 기금위원회(SFC)로부터 받는 공공 기금과 관련이 있으며, SFC에서 기금 결정의 기준으로 아테나 스완을 고려하고 있음.
- Athena SWAN상은 대학 및 학과 수준에서 수여: Bronze, Silver 또는 Gold로 나뉨. 신청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성별에 의한 진로 및 경력 향상과 관련하여 대학/학과 직위에 대한 평가와 불평 등에 대응하기 위한 4년 활동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은 또는 금 달성을 위해 그 활동을 통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함. Strathclyde는 10개의 동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수상했음

○ Gender Action Plans (GAPs)

- 이 역시 대학의 성과협약 일부인데, 스코틀랜드 기금위원회는 2016년 8월 GAP 발표함.
-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학생 성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부문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정책이며, 2030년까지 75% / 25 % 보다 큰 성별 불균형을 갖는 대상 영역이 없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SFC는 대학에서 여성과 남성의 대표적인 4개의 우선 순위 주제 영역을 선정하였음(여성 = 건축학, 공학, 기술, 컴퓨터 과학 . 남성 = 사회, 간호, 연수 교사, 심리학)
- 대학은 자신의 특정 대상 영역 불균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하

기 위해 자체 GAPs을 만들어야 함. 이 때 자체 데이터를 검토하여 문제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결정하고 이에 따라 조치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함.

- GAPs의 영역은 인프라(시스템, 인간, 자원, 관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교육자 및 직업상담사, 학부모, 현 학생), 인식 제고와 열망 (봉사 활동), 신청 권장(모집, 마케팅, 강좌 패키징), 성공 지원(성평등 환경 조성(Creating Gender Inclusive Environments)이나 학생 환경 개선 포함)

○ 성별임금격차 개선 정책

- 노동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임금 불평등, 즉 성별임금격차는 성별에 따른 직업의 분리나 시간제 노동의 여성화, 차별 등을 나타내주는 지표임.
- 성별임금보고의무: 대학은 2년마다 성별임금격차정보(남성의 시간당 임금(초과근무 포함) 대 여성의 시간당 임금 (초과근무 포함)의 차이 비율)를 공개해야 함. 이는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
- 동일임금보고의무: 동일임금은 비록 다른 업무라도 직업평가를 통해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정책임. 대학은 4년마다 동일임금상태를 공개해야 함.

○ 대학 내 평등한 안전 정책(Equally Safe in Higher Education)

- 젠더폭력에 대해 스코틀랜드 정부는 학대의 성별분석, 성평등의 맥락에서 폭력에 대한 접근, 예방 및 조기 개입에 대한 전체론적인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음.
- 대학 내 젠더폭력: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 확산. 대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여성폭력, 괴롭힘, 혐오범죄에 대해 조사한 Universities UK Taskforce의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대학 내 젠더폭력에 대한 이슈화.

- 스코틀랜드의 HEI가 문화변화 보고서 발간하면서, 스코틀랜드 대학내 활동에 대한 검토는 국가적, 위임된 정책 내에서 개입, 예방, 정책 및 실행을 맥락화해야 한다고 제시. 이에 따라 총 19 개 스코틀랜드 HEI에서 기존의 GBV 정책과 실천, 예방 및 개입을 수행
- 2017년 글라스고 대학교와 스트래쓰클라이드 대학이 성차별적 폭력에 대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간
- Scottish Higher Education의 GBV 서비스(2017년 3월): (스텝과 학생들을 위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캠퍼스에 전문가를 제공하고,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를 지원, 대학이 첫 대응자로서의 계획을 가고, 성적 남용에 대한 공식 정책 마련, 지역/국가적 Rape Crisis Centres(강간 위기 센터)와 공식적 파트너십을 마련, GBV 정책 워킹 그룹 마련, 워크샵 및 성폭력 및 GBV 혹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웹페이지 운영, 제3자 역할에 대한 접근(bystander approaches) 고려, 성폭력 상담소 등과 같은 외부 기관들과 함께 특화된 연수나 교육 제공, 대학내 Dignity & Respect Advisers(인간존엄 및 존중 위원회)와 Harassment Contacts(성희롱 신고센터) 설치, 예방, 교육, 연수나 캠페인 제공

○ 캠퍼스 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툴킷 프로젝트

- 스코틀랜드 정부의 기금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
- 프로젝트의 내용: 커리큘럼 & 지식 교환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졸업 후 학위 프로그램, 사회복지&교육부에서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캠퍼스 정책, HR, 캠퍼스 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캠퍼스 GBV 정책, 캠퍼스 GBV

안전 계획, 조직과 직원 개발, 사건 모니터링과 보고, 가해자에 대한 대응, 최초 대응자 교육 및 공개 처리, 보고 및 중재 경로를 마련하며, GBV 기본 예방을 위해 인지도 제고 캠페인, 제3자 개입 프로그램 (Bystander Programmes), 신입생 지침, GBV 예방 프로그램에 기반한 연도별 그룹, 또래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평가를 진행하며, 초기 개입을 위해 지원/서비스 경로에 대한 명확한 설명, 직원 및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및 서비스 제공, 모범 사례를 발굴함

- 기대효과: 1) GBV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요구 사항은 초기에 충분히 충족됨, 2) 가해자들이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고 재범이 줄어듦,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용 감소, 4) 젠더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용인 감소

□ 주요 질의 · 답변 내용

- 예방교육의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별도로 개발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 UN에서 제공하고 있는 8주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임. 전체적인 프로젝트 방향이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것에 있지 않고 전체적인 예방 및 초기 개입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있음.
- 제3자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농담처럼 통용되는 성차별적이고 성희롱적인 표현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제3자 개입은 그런 종류의 발언을 하는 당사자에게 비록 피해자는 아니지만 그것이 성차별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주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에 있음.

□ 기관 방문 사진



기관 설명



기관 사업 설명



질문 및 답변



단체사진

4] 스코틀랜드 지방정부협의회(COSLA)

구분	주요내용
일 시	2017. 6. 8. (목) 10시~12시 30분
장 소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협의회(COSLA) (The Convention of Scottish Local Authorities)
면담자	Anil Gupta (Chief Officer, Communities, CoSLA) John Wood (Policy Manager, Communities Team, CoSLA) Hayley Barnett (Improvement and Partnership Manager, Community Safety Division, Scottish Government) Joanna McLaughlin (Coordinator of Violence Against Women Partnerships) Trevor Owen (Policy Officer and Equally Safe Lead, Scottish Government)
기관주소 연락처	(주소) COSLA (Glasgow) floor 3, 49 Bath Street Glasgow G2 2DL (Tel) 0131 474 9200 ,cell) 0771 715 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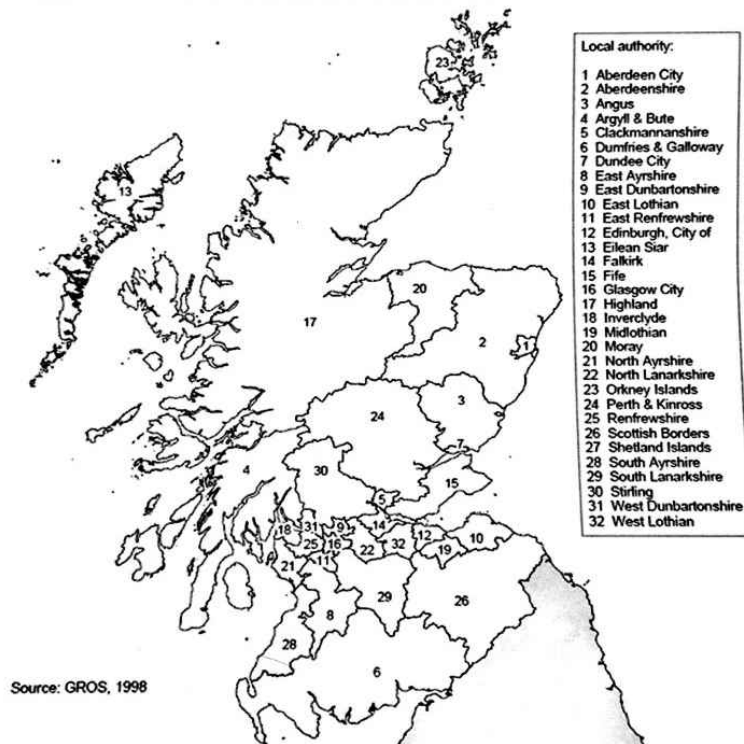
□ 방문 개요

- COSLA에 대한 소개
- 여성과 아동 폭력예방을 위한 COSLA의 주요정책으로 ‘평등한 안전(Equally Safe)’ 소개
- 스코틀랜드 공동체 안전 네트워크 포럼(SCSN) 및 공동체파트너십(CSP)의 역량강화와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

□ 주요 면담내용

- 영국 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와의 업무 분담
 - 영국 의회: 사회 안보, 이민, 외국인 정책, 고용, 무역과 산업, 에너지
 - 스코틀랜드 의회(정부): 교육 및 훈련, 환경, 보건 및 사회서비스, 주거, 법과 질서, 지방정부, 관광 및 경제발전, 교통
-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의 역할
 - 교육, 사회복지, 환경, 도로 및 교통, 주거, 경제발전, 문화와 여가, 공동체 사법

Local Government in Scotland



- 스코틀랜드 지방자치협의회(Convention of scotish Local Authorities: COSLA)의 소개
 - 법률로 지방정부 형태와 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상층지방정부가 하층지방정부를 감독하는 자치단체 간의 상하관계는 존재하지 않음.

- COSLA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스코틀랜드 지방정부협회로, 스코틀랜드의 지방정부와 구성원들의 이익과 지위를 보호하고 촉진하며, 이를 전국적인 목소리로 확대하기 위하여 1975년에 설립됨.
- 동 조직의 의사결정은 구성원인 지방정부가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선출되어 의사과정에 관여하고 합의하고 있음. 또한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전문지식을 지원받음

○ COSLA의 역할

- 지방정부의 보호 · 촉진 · 지원
-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 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중앙정부 등과 협의
- 지방정부의 발전, 효율적 재부관리, 민주주의 발전 등을 위한 정책 형성
- 지방정부들의 공통 관심사항 논의를 위한 Forum 제공
- 고용주로서 지방정부의 이익 대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다른 국가적 책임 수행
-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전파하는 등 지방정부에 필요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 연합체 정책이 촉진, 지방정부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다른 기관이나 일반인에게 제공

○ COSLA의 의사결정구조

- COSLA는 책임자들은 회장(president)과 부회장(vice president), 그룹리드들(group leaders), 대변인(Spokes persons)로 구성되며, 주요 의사결정은 COSLA Convention, COSLA Leaders meetings, COSLA Leadership Board, COSLA Executive Groups에서 이루어짐
- Convention는 COSLA의 정책과 발향을 결정하는 통치체계로 1년에 4회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대표자들 개최됨

- 주요결정기구는 지도자 회의(Leaders meeting)로 매년 8회 개최되고 각 지방정부의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하고 있음
- 주요 영역의 정책형성에 대한 책임은 각 대변인(Spokes persons)이 지고 있음
- 동 조직의 의사결정과 정책형성 시스템은 스코틀랜드 내의 모든 정치적 입장 차이를 정책형성과정 내에 포괄하여 담아내는 데 유용함.

○ COSLA 지원기구

- COSLA의 조직구조는 고위 운영 팀(senior management Team: SMT)과 분야별 팀(inter-disciplinary themed teams)으로 구성
- SMT는 전략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순위, 자원의 전략적 활용, 성과모니터링, 구성원의 조정과 발전 등을 추진함. SMT는 수석 행정관(Chief Executive), 부 수석 행정관(Depute Chief Executive), 협력담당관(Corporate Director) 등으로 구성
- 분야별 팀은 COLSA의 핵심적인 보좌기구로, 서비스 중심 분야와 처리 중심 분야로 구성됨. 각 분야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방자치 서비스와 기능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으로 이루어짐
- 각 팀들은 팀장, 정책 담당자(Policy Managers), 지원 스템으로 구성
- 각각의 팀이 독자적인소관과 책임 있지만 많은 정책 분야에서 둘 이상의 팀이 함께 작업

○ COSLA의 “평등한 안전” 정책 이행

- 평등한 안전 전략 위원회 구성: 스코틀랜드 정부와 COSLA가 협력하여 스코틀랜드 전역의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의 이행, 추

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쟁점에 대한 공유를 전개함.

- 단계적 접근: 전략위원회를 통해 안전한 평등전략과 쟁점을 공유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조기 예방, 역량, 사법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전략과제를 설정함. 아동청소년 관련 당사자 그룹을 구축하여 직간접적으로 폭력 경험을 한 소년과 소녀들에 대한 활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영역의 실무자들 간 협업을 강화함.
- 영역별 과제: 조기에방을 위해서는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전략을 설정하고 가장 넓은 범위인 사회, 지역사회, 개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정책을 실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보건, 교육, 사회복지, 주거와 관련하여 관련 서비스를 추진함. 사법과 관련하여는 스코틀랜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민형사체계에 접근하는 피해자의 경험을 고려하여 전략을 구축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사법적인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고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함. 여기서 나온 행동전략을 집행하기 위해 주도적 파트너의 지위를 확인하고 각 기관이 자신의 책임에 따라 행동전략을 이행하도록 추동함.

□ 주요 질의 · 답변 내용

- “평등한 안전” 정책은 스코틀랜드 중앙정부가 제시한 전략인데 COSLA와의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스코틀랜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약 55%를 차지하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이는 업무의 분리 때문임. 비록 “평등한 안전” 정책이 스코틀랜드 정부가 제시한 전략이긴 하지만, 이를 각 영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사적 영역과 제3영역 간

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 왜냐하면 역할과 활동범위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임.

- “평등한 안전” 정책의 핵심 기관은 스코틀랜드 정부, COSLA를 제외하고도, 여성 구조, 성폭력상담소, 법률구조 등과 같은 더 넓은 시민사회를 포괄하고 있음. 다만 스코틀랜드 정부와 COSLA가 각각의 영역별로 리드를 해야 할 영역을 분담하여 정하고 있음.
- COSLA가 리드 파트너인 영역: 여성폭력 파트너십의 활동 지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를 위한 다주체 컨퍼런스(Multi-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s, MARACs)의 역량 구축, 법정 기구와 파트너십들에서 관련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공섹터 고용인을 포함한 모든 고용인들이 직장에서의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여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기관 방문 사진



COSLA 방문사진 1



COSLA 방문사진 2



COSLA 방문사진 3



기념품 전달

⑤ 글라스고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 및 여성 폭력 파트너십

구분	방문개요
일 시	2017. 6. 8. (목) 15시~18시
장 소	글라스고 공동체 안전 (Community Safety Glasgow)
면담자	Ann Fehilly (Head of Strategic Services) Mhairi McGowan (Head of ASSIST & Domestic Abuse Service) Roseanne Cameron (Service Manager of the Roots out of Prostitution Programme) Bronagh Andrew (Operations Manager TARA)
기관주소 연락처	(주소) Community Safety Glasgow, Eastgate Building is on 727 London Road, Glasgow, G40 3AQ (Tel) 0141 276 7400 (Email) enquiries@communitysafetyglasgow.org

□ 방문개요

- 글라스고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에 대한 소개
- 글라스고 여성 폭력 파트너십에 대한 소개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인 화이트리본 캠페인, Partnership Intelligence Unit, 16 Days of Actio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등에 대한 활동공유

□ 주요 면담 내용

- 글라스고 공동체 안전(Community Safety Glasgow)

- 글라스고 공동체 안전은 글라스고 시의회(정부)와 경찰, 소방 및 구조 서비스, 대글라스고 및 글라이드 NHS, 시민사회단체 관련 담당자들과 서비스 간의 파트너쉽임.
- 글라스고 경찰과의 파트너쉽에서 특히 정보 공유 접근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주요 대상과 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다름.
- 크게 ①공동체 안전 증진, ②범죄/반사회적 행동 감소, ③환경 개선, ④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분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음.
- 공동체 안전 증진을 위한 활동: 신고 센터(Alarm Receiving Centre)를 1998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알람을 설치하여 이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CCTV의 설치와 모니터링 역시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음. Best Bar None 시상을 하여, 주취상태에서 일어나는 폭력, 무질서,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술집 등이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함.
- 범죄/반사회행동 감소를 위한 활동: 분석팀을 운영하여 파트너쉽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분석팀은 the Multi Agency Taksing and Coordination(MATAC)과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대응하고 청소년 사법 서비스와 연계활동도 전개함. 여기에서 Community Payback 활동도 전개하고 있음.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문제뿐 아니라 혐오범죄까지 조기 예방과 개입의 활동을 전개함. 범죄나

반사회행동에 개입할 때에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조정(mediation) 서비스를 제공함.

-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공동체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거리낙서를 지우는 활동을 함. 이웃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됨.

○ 정보 공유 팀(Partnership Intelligence Unit)

- 글라스고 CSP의 특징적인 부서로서, 스코틀랜드 경찰과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내의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함. 기물파손, 갯, 무기 성매매, 가정폭력, 소음, 쓰레기 투기 등 발생시,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발생 장소를 공유하여 빠르게 대응함.

○ 여성폭력파트너십(Glasgow Violence against Women Partnership, GVAWP)

-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으로, 여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젠더폭력에 대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력 체를 구성함.
- 글라스고에서는 여성폭력파트너십이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의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함
- GVAWP 역시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를 통해 폭력의

피해자가 된 여성,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 폭력, 강간 및 성폭력, 스토킹과 괴롭힘, 성매매를 포함한 상업적 성착취, 강제 결혼, 아동 결혼, 여성성기절단, 명예 범죄, 아동 성 학대의 경험 있는 성인 생존자를 지원함.

- 주요활동 방향: 1) 예방전략 및 여성의 안전과 피해자의 복지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함 2) 여성, 아동 청소년들의 욕구에 민감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함, 3) 여성폭력의 젠더적 속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성주류화를 실현하고자 함. 4) 지역 사회 내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피해를 입은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 활동: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해 학교 드라마 프로젝트를 매년 진행하여, 청소년들에게 젠더 스테레오 타입에 대한 편견과 폭력적인 관계에 저항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 2016년 글라스고는 White Ribbon City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가정폭력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하얀 리본 뱃지를 다는 캠페인 활동에 기초해 가정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시에 부여되는 것임. 16 Days of Action을 통해 매해 11월 25일에서 12월 10까지 전세계적인 젠더폭력 근절 캠페인에 동참함

○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활동

- ASSIT(Advocacy Support Safety Information Services Together): 2004년부터 시작된 가정폭력 당사자 지원을 위한 공동

체 참여형 서비스로 가정폭력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피해자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을 체계화한 것. 경찰 등 사법절차에 가정폭력이 신고되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법절차, 피해자 보호,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활동함. 24시간 신고할 수 있고, 가해자 긴급체포를 위한 위험성평거나 안전계획을 수립하며, 전문가의 관점에서 검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고위험군 피해자에게는 특히 집중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는 컨퍼런스에서 고위험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Routes Out of Prostitution: 성매매와 관련될 수 있는 위험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글라스고 시의회, 그리고 제3섹터가 함께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성매매로 여성이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며, 탈성매매 하고자 하는 여성을 지원하고,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사회 내 성매매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함.

□ 주요 질의 · 답변 내용

- 여성폭력예방을 위해 전개하는 활동이 매우 다양하고 적극적인데 인력이 충분한지?
- 팀에 따라 인력은 5명에서 50명까지 다양한데, 이는 활동지역이 글라스고시에 한정되는지 더 넓은 범위의 글라스고 지역을 다루는지에 따라 달라짐.

-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공무원의 경우 각자의 전담업무가 있고 중복하여 여러 업무를 하지 않으며 전문분야별로 선발되기 때문에 업무 순환이 되지 않아, 인력이 많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 기관 방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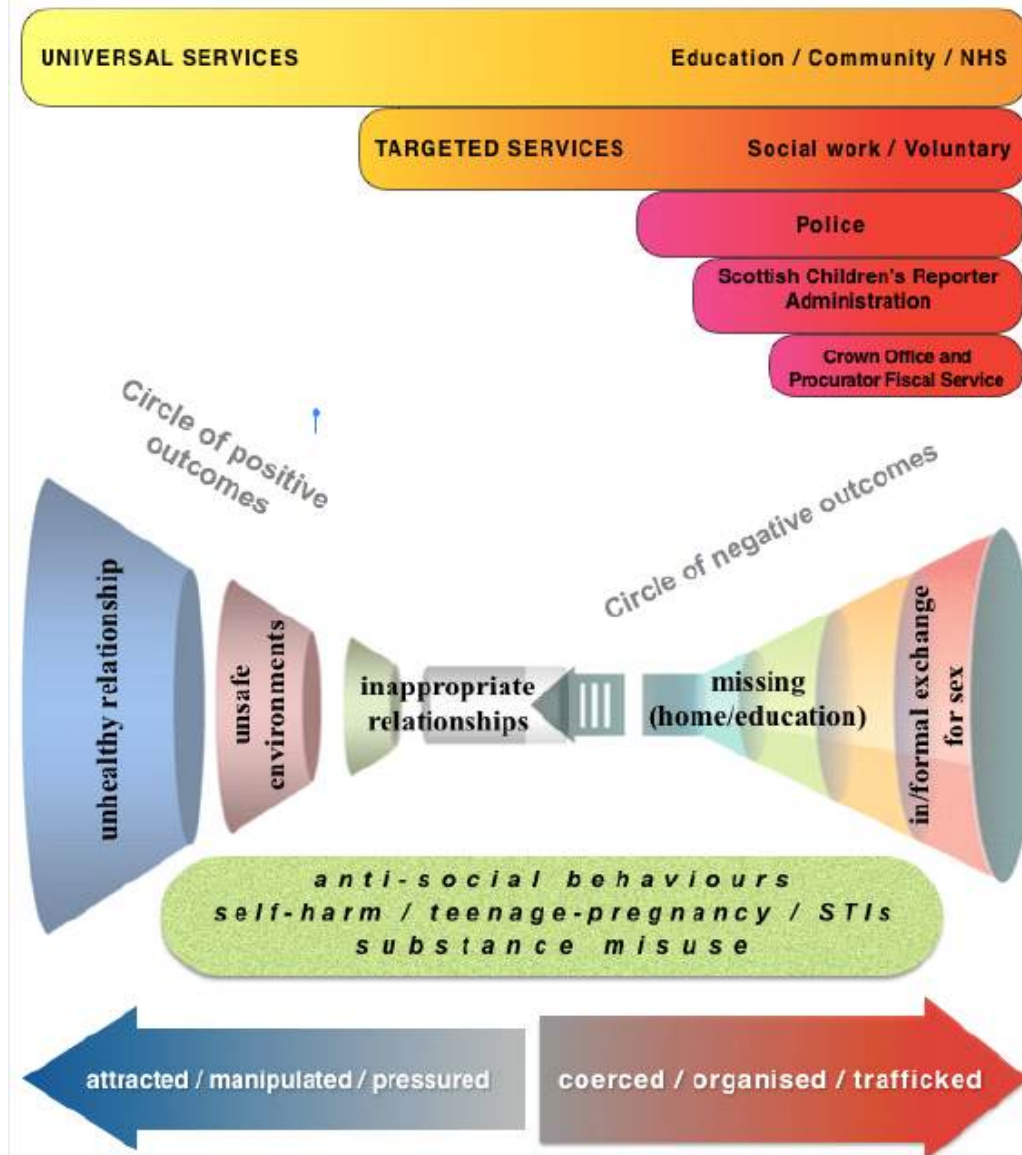


IV 기타 현지 활동

□ 해외 전문가 특강

- 영국 현지 아동여성 폭력예방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세미나
- 강연제목 : Child Sexual Exploitation in UK
 -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아동 성착취’로 변화하는 영국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 내용과 의미, 한계에 대해 소개
 - 미성년자 성매매 및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UK의 정책적 대응과 방향에 대한 논의
- ※ 영국은 아동 성착취 개념을 2014년 법률로 도입함
- 초청강사 : 나진녀 박사(사회학 박사)
 - University of Hull, Research Fellow
 - Associate Lecturer, The Open University
 - 2009 Ph.D. University of Essex, UK
- 주요 강연 내용
 - 영국에서는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가 뜨거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됨. 영국 아동판무관(Children’s Commissioner)은 한 조사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아동 수는 2,409명, 그리고 성착취 위험에 노출된 미성년의 수는 16,500명인 것으로 추정
 - 성인 가해자 기소를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은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및 2005년 아동보호 및 성범죄 예방법(Protection of Children and Prevention of Sexual Offences, 스코틀랜드) 등을 개정하여 성인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로부터 성을 구매하거나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 판매에 조력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형태로 전개 됨.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에 대한 금전적 거래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된 관심의 초점이 성행위에서 가해자 처벌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함.

Chart: Child sexual victimisation spectrum



- 현재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 성착취에 대한 대응 행동은 세 가지 P의 기치 아래 이루어짐.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기소(prosecution). 기소 프레임의 경우, 활동가들은 비난의 대상을 가해자로 전환함으로써 성매매 연루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가해졌던 낙인과 비난을 일소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임. 특히 의미있는 성과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안전, 복지, 성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드러내었다는 것임. 이 방식을 특히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통해 드러냄. 예방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은 취약성과 피해자화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미성년자의 행위주체성을 희생시켰다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미성년자의 행위주체성을 간과할 경우, 이미 불우한 위치에 있는 미성년자가 더욱 주변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미성년자의 행위주체성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거나 아예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들은 자신의 행위주체성을 자율적으로 표현하는 미성년자를 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됨. 미성년자가 행위주체성을 행사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흐려지는 것은 확실함. 현재 아동 성착취 담론과 정책의 또 다른 난점은,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착취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미성년자들 사이의 아동 성착취, 또래간의 성적 착취에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다는 점임. 이 문제는 특히 다른 문제보다 더욱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인 가해자-미성년 피해자의 이분법과 동의/선택 문제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임.
- 필요한 것은 영국에서 개발된 아동 보호 정책 및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임. 현재 영국의 아동 보호 정책 및 체계는 아동의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념과 불우 가정에 대한 지원 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논의는 복지 체계, 사회 내 훈육 및 통제, 현재 사회에서의 불평등 및 부정의에 대한 관심을 촉발할 수 있을 것임.

○ 세미나 사진



□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정책의 방향으로서 ‘성평등’ 확산

- 스코틀랜드가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은 “평등한 안전(Equally Safe)”라는 표제에서 나타나듯, 여성에 대한 폭력이 성별불평등한 젠더에 기초한 폭력이며, 폭력의 원인으로 남성 권력의 남용과 불평등의 문제라는 인식을 기초로, 1) 공공 영역 및 사적 영역 전반에서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통한 젠더 폭력 예방, 2) 젠더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여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의 조기 개입 강화, 3) 평등한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 체계 및 서비스 개선, 4)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우리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활동 역시 여성과 아동 대상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안전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 및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주된 활동의 방향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인 불평등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내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강화 활동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로 인해 여성폭력예방캠페인이나 안전사업의 내용이 주로 잠재적 피해 여성아동(내지 보호자)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잠재적 피해여성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신고체계(안심벨), 남녀공간분리, 1인 가구 대상 예방활동 등에 집중되는데, 오히려 여성들의 범죄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
- 향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과 같이 불평등한 성별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인 젠더폭력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것을 염두에 둘 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향후 방향은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좁은 개념의 젠더 폭력 예방책이 아니라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바탕을 둔 예방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여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범죄자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 최근 스코틀랜드는 사회복지적 차원과 공동체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관찰을 “공동체 사법(Community Justice)”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방향이기도 함. 다시 말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 내에서 관리하고 재사회화시키는 데에 집중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근절을 추구함.
- 이 때 범죄자를 관리하는 과정에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MARACs(Multi-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s)를 통한 성범죄자를 포함한 범죄자의 위험성 평가에서부터 중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 시스템인 MAPPA(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가 대표적인 것임. 스코틀랜드의 각종 파트너쉽을 통해 정부, 경찰, 소방서부터 제3섹터가 함께 참여하여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
- 현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범죄자 재범관리의 영역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보호관찰 업무의 소관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후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스코틀랜드와 같은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의 성격을 단지 범죄자에 대한 인지뿐 아니라 범죄예방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

□ 파트너들 간의 범죄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의 실효성 확보

- 스코틀랜드 공동체 안전 파트너쉽이나 여성 폭력 파트너쉽 그 외의 다른 컨퍼런스나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특징은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임. 여기서 파트너쉽의 목적은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함께 분석하여 재공유하고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활동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 활용하는 데에 있음. 이러한 정보 공유는 파트너십의 활동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자원임. 또한 정보 공유를 통해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상호이해도가 증진되고 협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음.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도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학교, 사법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나 아직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임.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연대 내에서 정보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음.

□ 지역 내 대학을 활용한 여성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확산

- 스코틀랜드 여성폭력방지정책인 평등한 안전의 주요한 영역은 대학내 평등한 안전(Equally Safe in Higher Education)으로, 대학 내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 간에 만연한 성희롱이나 성차별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에서부터 성폭력이나 성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지원방향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음.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매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프로그램은 그동안 주로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예방활동, 조기 개입을 위한 대학 내 대응체계 마련, 그리고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까지 함께 하는 안전프로그램으로 확산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네트워크 운영시 전담 인력의 확보

- 스코틀랜드 지방공무원의 특징상 인력채용이 자유롭고 업무배치가 전담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이나 여성 폭력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그

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스코틀랜드 지방공무원들이 자신의 전담 업무만을 책임지는 구조가 이러한 체계에서 확보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인력 자원의 확보는 파트너십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주된 동력이 된다고 보임.

- 우리의 공무원 채용이나 업무 배치의 특징상 특정 업무의 전담과 이를 통한 전문성 확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나, 다자 내지 다기관 간의 연계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양과 질을 고려할 때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실제 한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연대를 전담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연대 활동의 발전을 이루었던 사례가 있음.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연대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채용과 인건비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구성해나갈 필요가 있음.